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01호

나. 제 안 자 : 김정태 의원 외 11명

다. 제안일자 : 2021년 8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일자리 환경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4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등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4%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음.

나. 청년실업 및 청년 고용의무 현황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¹⁾은 올해 2월 10.1%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7월 기준 7.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3.2%)의 두 배를 넘고 있으며, 청년확장실업률²⁾은 22.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국 평균 9.4%에 비해 높으며, 경북(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임(2021년 2/4분기, 통계청).
-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축소되고, 수시·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임.

1) 청년실업률은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뜻하며, 청년 실업자수를 청년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함.

2) 청년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표로 구직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포함한 지표로 시간제 근무 종사자도 실업자로 판단해 실업률에 반영함(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상황판 2021. 8 31).

-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장려금과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임.³⁾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따라, 정원 30명 이상의 투자·출연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음.
-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6개)의 청년고용률은 2018년 4.5%에서 2020년 6.3%로 증가했으며, 2021년 현재 413명(1.4%)을 신규 채용하고, 하반기에 565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음(7월말 기준).

<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청년 고용의무 추진현황 >

(단위 : 명)

연번	기관명	정원 (A)	'21 청년신규 채용 실적(B)	'21 정원대비 청년고용률 (B×100/A)	비고
총계		28,769	413	1.4%	2020년 평균 6.3%
1	서울교통공사	16,523	18	0.1%	
2	서울시설관리공단	3,842	84	2.2%	
3	서울시농수산물공사	364	1	0.3%	
4	서울주택도시공사	1,313	0	0%	
5	서울에너지공사	280	15	5.4%	
6	서울의료원	1,741	172	9.9%	
7	서울산업진흥원	304	17	5.6%	

3)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함(2021. 8.26).

8	서울신용보증재단	478	1	0.2%	
9	세종문화회관	443	5	1.1%	보안, 청소 등 청년층 수요 낮아 전년도 1.5% 실적
10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165	5	3.0%	
11	서울복지재단	180	4	2.2%	
12	서울문화재단	226	0	0%	
13	서울디자인재단	160	0	0%	
14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77	2	2.6%	
15	서울관광재단	159	15	9.4%	
16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150	0	0%	
17	서울디지털재단	45	3	6.7%	
18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420	6	1.4%	상당 직군은 장총업무 적합도가 높아 전년도 1.2%실적
19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49	7	14.3%	
20	서울기술연구원	98	2	2.0%	
2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72	7	1.2%	
22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398	6	1.5%	
2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72	38	10.2%	

※ 제외대상기관 : ① 정원 30인 미만(서울장학재단), ② 직무 특수성에 따른 적용제외(서울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 상향(안 제4조)

-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 ----- ----- 100분의 4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축소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공공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는 입법효과가 있음.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이러한 관계법률의 입법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으로 상향하여 청년고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청년에 대한 고용 우대는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연령 등의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4)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5)등과 상충될 우려는 있음.

- 아울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야 할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5)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